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3·1절 명칭 변경 등〉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27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I . 제 안 경 위

1. 강경숙의원안(의안번호 제2209027호)

가.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2. 문진석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05호)

가.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4

다.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경숙의원안(의안번호 제2209027호)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2. 문진석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05호)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부가명칭을 부여함으로써 3·1절의 의미를 더 명확히 기리려는 것임.

강경숙의원안은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문진석의원안은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강경숙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 5. (생략)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 1. 3·1 독립선언일--- ----- 2. ~ 5. (현행과 같음)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 1. 3·1절(독립만세기 념일)----- 2. ~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공식적인 명칭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¹⁾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기념일임.

하지만 3·1절이라는 명칭에서 비폭력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이라는 상징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들은 3·1절의 명칭을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잘 드러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3·1절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 상징체계에 대한 조정이므로 폭넓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다른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부가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식명칭 변경 또는 부가명칭 부기와 관련하여

1)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여 3·1절은 제정 이래 국민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온 명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적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